

항공대 학군단 운영예규



항공대 학군단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6. 10. 10		16		
2	2017. 3. 27		17		
3	2017. 8. 11		18		
4	2018. 9. 28		19		
5	2025. 8. 29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항공대 학군단 운영 예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군과 한국항공대학교간의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1. 11. 7)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이라 한다)”이란 장교를 양성할 목적으로 학생군사교육이 인가된 대학(한국항공대학교)에 설치된 군사교육기관을 말한다.
2. “학군사관후보생”이란 장교가 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학(한국항공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어 학군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교내교육”이란 학기 중에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훈련을 말한다.
4. “입영훈련”이란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하여 실시하는 군사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군단 및 한국항공대학교 관련 부서/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군사교육훈련 통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공군 상위부서가 통제하며, 한국항공대학교와 협의한다.

제5조(책임)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한 관계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항공대학교 학군단장
 - 가. 교내교육 세부 계획 수립, 운영, 평가, 지도 및 감독
 - 나. 학군사관후보생 교육 관련 행정 지원
 - 다.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관리 <목 신설 2025. 8. 29>

라.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목 신설 2025. 8. 29>

2. 한국항공대학교

가.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독립 시설, 장비·비품 및 예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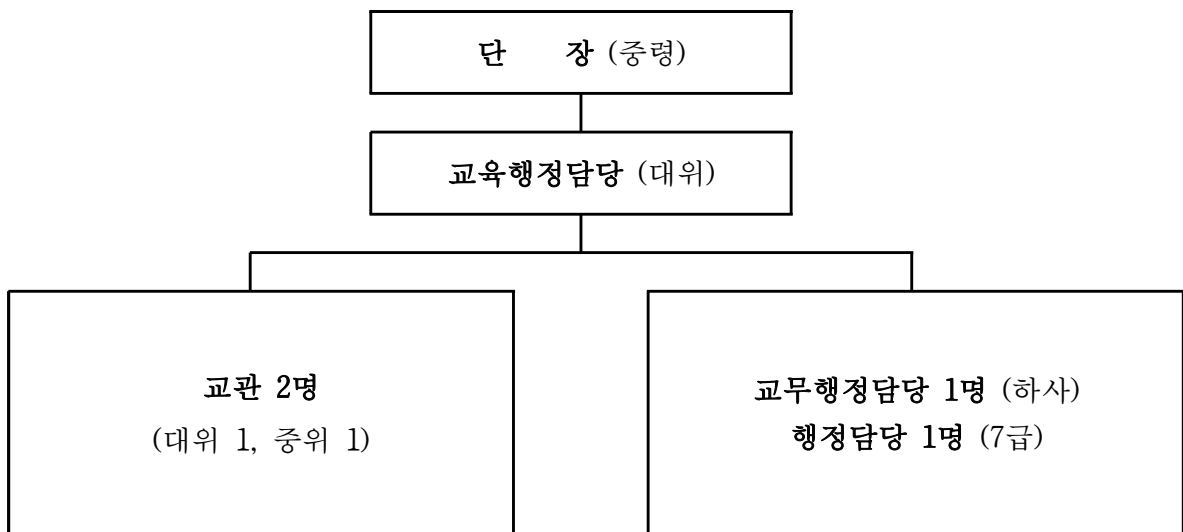
나.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교내교육에 대한 군사학 학점 운영

다. 학군사관후보생의 등록, 휴학, 제적 등 학적변동 및 성적에 관한 사항 제공

라. 기타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운영을 위한 양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제 2 장 조직 및 편제

제6조(조직) 학생군사교육단장(이하 단장) 예하 교육행정담당, 교관 및 각 담당으로 편성한다.<개정 2018. 9. 28> <개정 2025. 8. 29>



제7조(선발대상 및 정원) 학군사관후보생 선발대상 및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발대상은 한국항공대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7.3.27.>
2. 정원은 학년별 75명으로 하되, 조종자원은 항공운항학과 및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군이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의 인원을 우선 선발하고, 일반자원은 기타 학과에서 선발한다.<개정 2017.3.27.> <개정 2025. 8. 29>

제8조(업무체제) 교관은 학군사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 및 훈육을 담당하고, 행정지원요원은 학군사관후보생 기본군사훈련에 대한 교무행정 지원업무를 담

당하며, 교육행정담당관은 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한다. 이를 위한 업무체계는 관련 공군 상부규정에 의한다.

- 제9조(교육위원회)** ① 교육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는 공군 군사교육 규정(공규 2-61)을 따른다.

제 3 장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

제10조(교육목적 및 목표) 학군사관후보생 교육목적 및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목적

초급 지휘관리자로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목표
 - 가. 군 기본자세 확립
 - 나. 투철한 군인정신 함양
 - 다. 강인한 체력단련 및 전술전기 연마
 - 라. 지휘관리능력 함양

제11조(교육훈련)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군사훈련 <개정 2025. 8. 29>
 - 가. 대상 : 학군사관후보생 입단 예정자
 - 나. 시기 : 방학기간 중 (3학년 : 5주, 4학년 : 3주) <개정 2025. 8. 29>
 - 다. 장소 :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 라. 통제 및 책임 :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장
2. 교내교육
 - 가. 대상 : 학군사관후보생 3, 4학년
 - 나. 시기 : 학기 중 화, 금요일 주당 6시간
 - 다. 장소 : 학군단
 - 라. 통제 및 책임 : 학군단장
3. 입영훈련
 - 가. 대상 : 학군사관후보생 3, 4학년
 - 나. 시기 : 방학기간 중(입영훈련 4주)
 - 다. 장소 :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라. 통제 및 책임 :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장

제12조(평가)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구분은 교내교육 평가, 입영훈련 평가, 임관종합평가로 구분한다.
2. 평가 종류 및 시기는 공군 상부규정에 의한다.
3. 학군사관후보생 징계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후보생 생활지침서 및 공군 상부규정에 의한다.

제13조(학군단 운영위원회) ①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예산평가팀장 등과 학군단장, 교육행정담당관, 선임교관으로 구성한다.
- ③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 신설 2016.10.10.>

제14조(지원) 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② 대학은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유치에 필요한 홍보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③ 대학은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 ④ 대학은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8.11.> <개정 2025. 8. 29>

1. 학군사관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 <호 신설 2025. 8. 29>
2. 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 준비 <호 신설 2025. 8. 29>
3.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선발 관련 예산 <호 신설 2025. 8. 29>

제15조(기타사항)

- ① 학군사관후보생 선발기준
 1.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발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자

3. 매학기 백분율 학점 평균 성적이 70/100 이상자

4. 그 외 사항은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및 선발 규정에 따른다.

② 군사교육 운영

1.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기초군사훈련, 교내교육, 입영 훈련 등의 군사교육을 실시한다.

2. 군사교육은 교육부 및 국방부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항학과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교내교육은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공항 및 비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안보학 운영에 관한 사항

1. 학군사관후보생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5개 이상의 안보학 관련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한다.

2. 학군사관후보생은 졸업 시까지 3개 이상의 안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다.

3. 1~2학년 재학 중 안보학 관련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해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그 외 사항은 공군간의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따른다.

④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1. 학군사관후보생의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등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은 학칙을 따른다.

2. 학군사관 후보생의 학력수준 제고를 위해 매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 70/100 이상이어야 하며, 4학년 2학기(매년 12월31일)까지 TOEIC 700점 이상(TOEFL/TEPS 등은 환산점수 가능)의 공인 성적표를 공군에 제출한다.

⑤ 장학금 지급

1. 학군사관후보생 중 군장학생 등으로 선발된 자의 등록금은 국방 예산안 편성지침의 등록금 지급단가에 따라 지원 받는다.

2. 조종자원의 비행실습비는 공군의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면장취득 수준에 따라 지원 받는다.

⑥ 인적자원 교류에 관한 사항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공군과의 인적자원 교류를 실시한다.

2. 인적자원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항공대학교와 공군간의 학군사관 후보생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따른다.

⑦ 비행훈련에 관한 사항

1. 학군사관후보생 중 조종자원에 대하여 공군 비행교육 기본 정규과정 입과를 위해 최소 자가용 면장을 취득토록 교육을 실시한다.

2. 비행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항공대학교와 공군간의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따른다.

⑧ 비행평가에 관한 사항

1. 학군사관후보생 중 조종자원에 대하여 비행적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행평가를 실시한다.

2. 비행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항공대학교와 공군간의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따른다.

⑨ 기타 학군후보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항공대학교와 공군간의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17.8.11.>

부 칙

1. 이 규정 이외의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부 규정을 따른다.
2. (시행일) 이 운영예규는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운영예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운영예규는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운영예규는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운영예규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운영예규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